

(2) 포스트팁스(Post-TIPS)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팁스(TIPS)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
- 지원대상** : 팁스 R&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“완료(성공)”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** 이내 창업기업
 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 - *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(평균 3.3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< 지원 내용 >

구분	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	현금	현물
일반*	18개월	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30% 이상 현금·현물 제한 없음	
최우수**		최대 7억원 총 사업비의 80% 이하	총 사업비의 20% 이상 현금·현물 제한 없음	

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** 팁스 성공 요건(매출, 고용, 투자 등) 초과 달성(예 : 2배 이상) 등 우수 성과를 달성한 일부 창업기업 대상 포스트팁스 선정 후 사업비 최대 7억원 배정

- 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
- 선정규모** : 77개사 내외

< 포스트팁스 주관기관 >

연번	주관기관	선정규모 (개사)
1	한국벤처캐피탈협회	77개사 내외
2	한국기술벤처재단	

* 선정규모 및 일정은 기관별 신청·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
(대내·외 상황에 따라 모집 차수별 일부 주관기관에서만 창업기업을 모집할 수 있음)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, 후속투자 유치 금액*이 100억원 미만이며, 아래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

*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틱스 선정 이후 유치한 국내·외 투자금액의 합계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18년 5월 9일 ~ 2025년 5월 8일

•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•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
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[참고1]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
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•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※ (**참고사항**) 단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4항에 따라 **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**

* **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**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-2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
→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,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,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후에도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<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>

인공지능	스마트제조	드론·개인이동수단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빅데이터	시스템반도체	미래형 선박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5G+	자율주행차	재난/안전	우주
블록체인	전기수소차	스마트시티	차세대 원전
서비스플랫폼	바이오	스마트홈	양자
실감형콘텐츠	의료기기	신재생에너지	사이버 보안
지능형 로봇	기능성 식품	이차전지	

-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- ⑤ 중소벤처기업부 '팁스 R&D' 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*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(계속 사업을 '25년에 협약한 경우 참여 불가)
- 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([참고3] 참조)
-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-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-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2025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신청·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2

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(평균 3.3억원) 및 창업프로그램 등

- 팀스 성공기업 중 우수한 성과(성공 요건 2배 이상)를 달성한 일부 팀스 졸업기업은 사업비 최대 7억원 지원(자기부담사업비 비중 하향)

* 팀스 R&D 성공 요건(매출, 투자 등) 2배 이상 달성기업(총 지원규모의 최대 10%)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지원 (평균 3.3억원, 우수성과 일부 기업에 최대 7억원까지 지원)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, 현물 제한없음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3억 5천만원인 경우)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6 763 1417 920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 colspan="2">총사업비의 3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5억원 (100%)</td> <td>3억 5,000만원 (70%)</td> <td>5,000만원 (10%)</td> <td>1억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30% 이상		5억원 (100%)	3억 5,000만원 (70%)	5,000만원 (10%)	1억원 (20%)
	총 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
현금		현물	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30% 이상													
5억원 (100%)	3억 5,000만원 (70%)	5,000만원 (10%)	1억원 (20%)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본 프로그램) 참여기업의 수요 및 성과, 업력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기본 프로그램(예시) 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3 1496 1414 1865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유치</td> <td>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</td> </tr> <tr> <td>글로벌진출</td> <td>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</td> </tr> <tr> <td>EXIT</td> <td>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관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• (특화 프로그램) 주관기관의 강점·인프라 등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	구분	주요내용	투자유치	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	글로벌진출	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	EXIT	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						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
투자유치	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														
글로벌진출	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														
EXIT	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														

4

접수방법

□ 접수 기간

- 1차 : 2025. 5. 8.(목) ~ 5. 27.(화), 16:00까지
- 2차 : 2025. 8. 1.(금) ~ 8. 20.(수), 16:00까지

* 신청·접수 현황 등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접수 일정 및 횟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접수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- 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- 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- 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 5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** 처리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

- [붙임 2] 양식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제출서류 각 1부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파일 첨부	<p>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</p> <p>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 으로 압축 후 제출</p> <p>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30MB 초과 불가</p>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 파일 첨부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⑦ 청렴서약서		
⑧ 주주명부		
⑨ 팀스 졸업 성공 논문		
⑩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PDF 파일 첨부	
⑪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⑫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 (‘휴·폐업’사업자 보유 시)		
⑬ 기타 가점 및 성과관련 증빙서류 등	PDF 파일 첨부 (가점* 해당시)	
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신청기업 요건 검토,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신청·접수	② 요건 검토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창업기업이 K-startup에서 사업 신청	요건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	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(1차) '25.5.8~5.27	'25.6월 중	'25.6월 말	'25.7월 초
(2차) '25.8.1~8.20	'25.9월 초	'25.9월 중	'25.9월 말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*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□ **평가 방법**

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가점 등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후, 요건 충족 기업 대상 발표평가 안내

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가 발표평가에 참여해야 하고, 발표·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* 평가시간 : 40분 이내 (발표 20분 내외 + 질의응답 20분 내외)

③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기업은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포스트팁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미제출시 차순위자에게 사업 참여기회 부여)
 - 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- 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- 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- 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포스트팁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- *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- 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- *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 발표평가 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의 개발·고도화 동기(문제인식), 시장 및 문제 분석 등
실현가능성	• 문제 해결 고도화 및 고객 수요 대응 방안, 경쟁력 확보 전략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스케일업 전략(타당성, 일정 등), 자금조달·EXIT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인력의 역량과 추가확보 방안, 지속가능경영 등

- 청년창업기업(대표자 만 39세 이하),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및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기업에 각각 1점(최대3점)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청년창업기업 (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, 공동·각자 대표는 1인이상)	1점	최대 3점
2)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붙임3 참조]	1점	
3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	1점	

사업 운영일정 ※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선정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